

1997. 2. 18.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 충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충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 충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제정 및 개정 조례 안심사보고

1. 심사 결과

조례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97. 1. 31	'97. 2. 1	'97. 2. 13	'97. 2. 14	조경과장
충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97. 1. 27	'97. 1. 29	"	"	"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7. 1. 31	'97. 2. 1	'97. 2. 14	"	수자원관리과장
충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안	"	"	"	"	"
충주시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97. 1. 27	'97. 1. 29	'97. 2. 13	"	건설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시공원법 제1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조성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시공원 입장료 → 개인 300원 ~ 800원, 단체 200 ~ 600원
- 도시공원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예표소에서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
-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규정

나.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 종민동 계명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시설물 (숲속의집, 가족호텔) 증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설사용료 인상조정

- 주차료 1대/1일 3,000원~5,000원, · 숲속의집 1동/1일 30,000원~60,000원
- 가족호텔 1실/1일 40,000원~100,000원, · 캠프화이어장 1개소/1일, 30,000원
- 오토캠프장 1개소/1일 5,000원

다.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동에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사항
-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에 관한사항
- 재해대책본부 회의 협의사항
- 재해기간 유관기관 공무원 파견근무에 관한사항

라.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 제안이유

-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조성에 관한사항
-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사항
- 기금의 용도에 관한사항
-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사항
-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사항
- 결산 및 보고에 관한사항

Ⅳ.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충주시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종전의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방단의 일부에 관한사항
- 수방단의 조직에 관한사항
- 수방단 조성에 관한사항
- 수방단 교육훈련 및 소집에 관한사항

Ⅴ.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 제2항 : 공시지가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제5항 :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 원미만은 절사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점용료의 종류란 제2호 세분란중 직경 1m초과를

→ 직경 1.0m초과 2.0m이하, 직경 2.0m초과 3.0m이하,

3.0m초과로 단위를 세분(기타의 관포함)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 점용률의 종류란 제3호 세분란의 간판에

돌출간판 포함.

○ 점용료 소액징수 면제점 상향조정

- 5,000원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가.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 한금공원은 충주시민의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유일한 안식처로 자리잡아 오고 있으며,
- 지금까지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치 않아 부담없이 출입을 하였으나 반면에 현실적으로 시재정이 열악하여 과감한 투자를 못하였음.
- 또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일시적인 이용객감소 및 공원내 휴게음식점 이용객 감소로 업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공원내 편의시설 등 각종시설을 보완 증설하고 확충하여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케 하므로서 명실상부한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케하여 충주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96. 5. 충북도로부터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현실화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례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또한 새로 조성된 계명산 자연휴양림이 금년봄에 개장됨에 따라 숲속의집, 가족호텔등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징수 규정을 제정해야 함.

- 자연휴양림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 및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개정안【별표 2】 하단 비교 1호에 11시를 오전 11시, 익일 11시로 명확히 규정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교 2호에 "샤워장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자진납부함을 설치하여 납부"에 있어 자진납부함은 시에서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말미의 납부를 징수로 용어를 수정함이 바탕적 할것임.

다.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동에관한조례안

- 본조례 제정안은 내무부 준칙안과 충북도의 표준안을 적용 제정된 것으로서 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조례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신설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음.

(신설)

- 제2조(재해대책 본부의 조직)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로 신설하여 안제2조~6조를, 제3조 ~ 제7조로 변경하고,
- 수정된 제3조 제2항에 있어 상황반장과 담당관은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를 상황반장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수자원관리과장이 되고로 그직을 명문화 하여야 할 것으로 봄.

라.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본 조례는 관련법에서 위임된 바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조례로서 내무부 준칙안과 충북도의 표준안에 의거 작성,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의 자연재해대책 담당과장을 수자원관리과장으로,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을 방제계장으로 우리 직계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마.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내무부의 준칙안과 충북도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것이나

시조례 자체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보완 수정 검토사항)

○ 제3조 (조직)에 시행령 제①항 및 ②항에서 규정한바 대로 ①항 및 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본 조례안의 ①항과 ②항은 각각 ③항과 ④항으로
변경한다.

(신설)

○ 수방단은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방단에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등을 둔다. 는 조항을
신설 삽입하고, 기준(안)의 ①, ②항은 ③, ④항으로 변경하여야 하겠음.

마.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산정금액중 100원미만의
소액은 절사, 소액징수 면제점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를 산정기준(모든관)의 세분화 등을 내용으로 한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제5조(소액부징수)에 있어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일을 징수 하지 않는다"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명시 한바와 같이
부과 하지 않는다로 수정함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며,

○ 또한 [별표 1] 하단 비고 4호에 있어서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가로 끈어서 산정한다"를 10원 단위로 끊어서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볼.

4. 질의·답변요지

가. 충주시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질의)

○ 한글공원의 입장료 징수로 각광을 받는 공원조성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용료징수가 부당하다고 조영진 외 1003명으로
부터 제출된 건의서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한글공원내 영업자는 3인이며 공원입장료 징수를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2인은 찬성하고 1인은 반대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 영업장 및 사찰등에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충주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하루빨리 입장료징수 및 민자유치를
통하여 공원내 좋은 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질의)

○ 산주와의 입장료 배분 비율은?

□ 답변

○ 조례가 제정되면 잠정적으로 20% ~ 30%을 배분해 주는 것으로 협의 하겠음.

(질 의)

- 문화원에서 매점과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 예식, 아워음악당, 사용에 따른 대책은?

☞ 답 변

-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매점은 비공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원과는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하겠음.

(질 의)

- 탄금대 주차장 활용계획은?

☞ 답 변

- 문화원앞 주차장을 활용 하겠으며 수요를 충족치 못할 경우 탄금대입구 시설을 사용토록 하겠으며 폐포소는 탄금대입구와 약수터입구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임.

(질 의)

- 탄금공원은 아직 운동 및 유희시설이 미비하고 상인들과 불협화음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때 입장료징수관계는 과감히 결정해야 할 것임.

☞ 답 변

- 현재 운동 및 유희시설은 갖추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현시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시정해야 할 것임.
- 현재까지는 미화요원 2명을 배치하고 계속적인 투자만하여 왔으며 입장료 징수시 년 6,000만원은 징수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5년간 평균 수치임)

(질 의)

- 탄금공원은 개인소유 재산인바 시비로 계속 시설할 경우 시설에 대한 재산권이

시로이관 되는지 여부와 항구 재산권 주장에 따른 법적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조치 바람.

☞ 답변

- 현재 협의된바 없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조치 하겠음.

(질의)

- 현재 탄금공원의 시설이 미비하여 '97당초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으며
빼부된 현황에 외자차량 70%, 관내차량 30%라는 조사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입장료징수와 관련하여 산주와의 정확한 협의와 이용객의 현황등 기초조사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답변

- '97당초예산이 삭감된 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예산이 계상됨으로서 의회에서
삭감되었고 차량조사 근거는 10년전부터 청소인부로 하여금 조사 하였으며,
산주와 협의관계는 조례가 제정된후 실도있게 협의할 예정임.

(질의)

- 유치원 및 학생들이 소풍 올때의 입장료징수 여부는?

☞ 답변

- 소풍은 년2회 실시되며 입장료는 징수할 예정임.

(질의)

- '96예산에 계상된 3,000만원은 어떠한 시설을 설치 하였는지?

☞ 답변

- 입장료를 징수할수 있는 규정에 맞도록 회전무대, 원형정글, 터널구름다리,
정글집, 안전그네, 오름대, 종합놀이대등, 7종을 설치하였음.

나.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질의)

- 휴양림 입장료를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 답변

- 본 조례는 '96. 5. 9. 제정되었고 그후 5월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요금상향지침이 내려왔으나 바로 개정치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으며 개정안의 요금은 평균 50%정도 상향조정된 것으로 전국이 같은 수준의 금액임.

(질의)

- 기름값 인상등으로 연료비가 과다 지출되므로 사용료를 인상해야 할 것임.

■ 답변

- 계명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가족호텔(콘도)만 보일러 시설이고 타동은 전기를 사용토록 시설되어 있으며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조정 하겠음.

(질의)

- 휴양림은 현재 전국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는 전국 수준에 요금을 징수해야 할 것임.

다.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질의)

- 집행부에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 성안시 삼위법의 저축여부 등의 철저한 검토로 제의요구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답변

- 철저히 검토 하겠음.

(질의)

- 조례등 안전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준칙안, 표준안등의 자료를
별부 바람.

▣ 답변

- 알겠음.

■ 4.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질의)

- 현재지번시에는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재해대책기금의 재원조달
계획은?

▣ 답변

- 재해대책기금은 수해등 재난시 외에 사전에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재원은
전액시비이며 충지방세의 100분의 8정도를 예산계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5.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질의)

- 수방단 조직에 있어 지역주민을 15이내로 구성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보상계획은
없는지?

▣ 답 변

○ 보상계획 없으며 주민자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겠음.

▶▶ .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질 의)

○ 상가지역에 있어 건물앞의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 부과여는?

▣ 답 변

○ 노점상은 지도단속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며 합법적인 사항은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부과함.

(질 의)

○ 도시미관지구의 건축시 도로인접지역과 건물을 2m정도 띄워야 하는데 그 공지에 본인이 상품을 진열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지?

▣ 답 변

○ 도로에 한하여 단속을 하며 개인소유토지에 대하여는 단속을 할 수 없음.

5. 수정안 요지

○ 별 자

6. 심사결과

가.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 나.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
다. 충주시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라. 충주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마. 충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바. 충주 시도로 점용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7. 별첨

- 가. 충주 시도시 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나.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다. 충주시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라. 충주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마. 충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바. 충주 시도로 점용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별지 1]

▣ 조례명 :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 비교 2중 "설치하여 남부"를 "설치하여 징수"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조 - 제10조 (생략)	제1조 - 제10조 (원안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원안과 같음)
[별표 1] (생략)	[별표 1] (원안과 같음)
[별표 2] (도표 생략)	[별표 2] (원안과 같음)
비고 : 1. (생략) 2. 샤워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방법은 자진남부함을 설치하여 남부	비고 : 1. (원안과 같음) 2. ----- 설치하여 징수

[별지 2]

▣ 조례명 :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중 "상황반장과 담당관은 담당국장과 과장이"를 "상황반장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수자원관리과장이"로 한다.

안 제6조 중 "자연대책법시행령"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생략)	제1조 (원안과 같음)
제2조 (대해대책본부의운영) ① (생략) ② 통제관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u>상황반장과 담당관은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u>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자 등으로 한다.	제2조 (대해대책본부의운영) ① (원안과 같음) ② <u>상황반장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수자원관리과장이</u> .
제3조 - 제5조 (생략)	제3조 - 제5조 (원안과 같음)
제6조 (기타) 이조례에 규정된 것이 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자연대책법시행령</u>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정한다.	제6조 (기타) <u>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u> .
부칙 (생략)	부칙 (원안과 같음)

[별지 3]

▣ 조례명 :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자연재해대책담당과장"을 "수자원관리과장"으로
같은조 제3호 중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을 "방재계장"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원안과 같음)
제6조 (회계공무원) ① (생략)	제6조 (회계공무원) ① (원안과 같음)
1. (생략)	1. (원안과 같음)
2. 기금분임운용관 : <u>자연재해대책담당</u> <u>과장</u>	2. - - - - - : <u>수자원관리과장</u>
3. 기금출납공무원 : <u>자연재해대책담당</u> <u>계장</u>	3. - - - - - : <u>방재계장</u>
② (생략)	② (원안과 같음)
제7조 - 제8조 (생략)	제7조 - 제8조 (원안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원안과 같음)

[별지 4]

▣ 조례명 :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징수"를 "부과"로 안(별표 1) 비교 4중 "단위위당"을 "단위당"으로
"단가로 끈어서"를 "단위로 끈어서"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 제4조 (생략)	제1조 - 제4조 (원안과 같음)
제5조 (소액징수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소액징수부) - - - - - - - - - - - - <u>부과</u> - - - - .
제6조 - 제11조 (생략) 부칙 (생략) [별표 1] (도표 생략)	제6조 - 제11조 (원안과 같음) 부칙 (원안과 같음) [별표 1] (원안과 같음)
비교 1. - 3. (생략)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u>단위위당</u> 금액은 10원 <u>단가로 끈어서</u> 산정한다.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철사한다. 예 1,950원 = 1900원)	비교 1. - 3. (원안과 같음) 4. - <u>단위당</u> - - - - - <u>단위로 끈어서</u> - - - - . - - - - - - - - - - .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의 관리자(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초등학생)를 말한다.
2. "청소년 및 군인"이라 함은 13세이상 20세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방위병·공의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일반"이라 함은 21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라 함은 공원구역내에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료"라 함은 제5조의 【별표2】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할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에 조성한 공원중 도시공원법 제14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공원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된 충주시 탄금대근린공원에 적용한다.

③제2항 외의 도시공원중 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조성이 완료된 신규조성 공원에 한하여도 적용한다.

④제3항의 신규조성 공원에 대하여는 공원의 명칭 및 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장료의 징수) ①시장이 징수하는 도시공원의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도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에 의한 입장료를 납입하고, 입장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사용료는 그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로 조성된 공원의 시설사용료는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사용요금을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시설사용료 징수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

6. 국가 유공자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이용시간) 공원의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입장료의 반환금지)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고자 이미 납입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원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임대계약에 의하며,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도시공원 구역안의 사유재산을 공의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의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손익계산에 의거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익금 지급 및 시기, 방법, 절차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11조 (게시사항) 시장은 공원안에 다음사항을 출입자가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공원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입장료 및 시설사용 요금표
4. 이용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세입세출등) ①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공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입장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입장요금		대상
	개인	단체	
어린이	300	200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초등학생)
청소년 및 군인	500	400	13세 이상 20세 이하인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 의무경찰, 방위병·공익근 무요원을 포함한다.)
일반	800	600	21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이에 동등한 전투, 의무경찰, 방위병·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요금	비고
주차료	소·중형차량 (승용·승합)	1대/1일	1,000	
	대형차량	1대/1일	2,000	
야외음악당	잔디광장포함	1식/1회	30,000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수 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 개정

시설 사용 요금 표 (제6조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요금	비고
주 차 료	소, 중형차량 (승용·봉고차)	1대/1일	3,000	
	대형차량	*	5,000	
술 속 의 집 (통나무집)	4인용	1동/1일	30,000	
	5-8인용	*	40,000	
	9-14인용	*	50,000	
	15인 이상	*	60,000	
캠프화이어장		1회사용	30,000	앰프시설포함
오토캠핑장		개소/1일	5,000	주차 및 야영 4-5인용텐트1조
평 상	소형(2평미만)	개소/1일	2,000	
	대형(2평이상)	*	3,000	
테니스장	1면당	시간/면당	4,000	
강 외 실		1동/1일	60,000	
단체숙소		1동/1일	100,000	
샤워장	어른	1회사용	800	
	학생	*	500	
가족호텔 (통나무집)	5-8인용	1실/1일	40,000	
	30-40인용	*	80,000	
	50인 이상	*	100,000	
	회 의 실	*	80,000	

비고 : 1. 1일 사용료는 익일 11시까지로 하며, 11시 이후는 1일 사용기간으로 간주하여

추가 징수

2. 샤워장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자진납부함을 설치하여 납부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상황반장,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 통제관은 기획실장으로하고 상황반장과 담당관은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인경우 소령급이상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자로 구성한다.

1. 충주시
2. 충주경찰서
3. 충주시교육청
4.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5.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6. 충주기상관측소
7.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사무소
8. 한국전력공사충주지점
9. 한국통신공사 충주건설국
10. 한국통신공사 충주전화국
11. 공군 3515부대, 육군 3105부대, 6010특공대, 3923부대, 3800부대
12. 충주지방노동사무소
13. 충주소방서
14. 충주역
15.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이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부시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자연재해대책담당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 (안)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충주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② 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 (단장)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 가. 주민대피 유도
- 나. 재해 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은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 가.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 나. 피해 시설물의 긴급복구
-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 나. 사망자·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 다. 재해 발생지역의 방역실시
-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충주시조례 제23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기존의 수방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방단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충주시 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2항및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의 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철사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료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표
	적 용 단 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와 유사 한것	전 주	1개	600
	전 주 와 유 사 한 것		900
	공 중 전 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 가스관 · 송유관 · 기타 이와유사 한것	수도관. 하수도관	직경 0.1m 이하	150
	· 가스관	직경 0.1m 초과 직경 0.2m 이하	
	· 송유관	직경 0.2m 초과 직경 0.4m 이하	
	· 전기관	직경 0.4m 초과 직경 0.6m 이하	
	통신시 설 관	직경 0.6m 초과 직경 0.8m 이하	
		직경 0.8m 초과 직경 1.0m 이하	
		직경 1.0m 초과 직경 2.0m 이하	
		직경 2.0m 초과 직경 3.0m 이하	
		직경 3.0m 초과	
	기타의 관	직경 0.1m 이하	
		직경 0.1m 초과 직경 0.2m 이하	
		직경 0.2m 초과 직경 0.4m 이하	

점 용 료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표	
	적 용 단 위	기 간 단 위		
	직경 0.4m초과 직경 0.6m이하 직경 0.6m초과 직경 0.8m이하 직경 0.8m초과 직경 1.0m이하 직경 1.0m초과 직경 2.0m이하 직경 2.0m초과 직경 3.0m이하 직경 3.0m초과	길이 1m	1년	1,350
				1,800
				2,250
				3,350
				5,600
				7,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 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 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 함한다.)	일시설치한것 (1월미 만점용)	표시면적1㎡	1일 100
		기 타	표시면적1㎡	1년 15,000
	현수막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2,500
		제사나 종교행 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것	표시면적1㎡	1일 50
		기타의 용 도		100
	아 취	도로 칭 단	표시면적1㎡	1년 30,000
		기 타		15,000
4. 주유소. 주차장.여 객 자동차 터미널,자 동차수리 소.승강대 .화물적치 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 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 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 입 로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4 를 곱한금액

점 용 료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표
	적 용 단 위	기 간 단 위	
6.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전열대	점용면적1㎡	토지가격에 0.01 을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점용한것	점용면적1㎡	1일 1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 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끈어서 산정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1,455원 = 1,400원, 1,995원 = 1,950원)을
→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 = 1,900원)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